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9
----------	-----

2024. 11. 26.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6.)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19.12.3., 법률 제16666호)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2조)

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제3조 ~ 제4조)

다.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제5조 ~ 제6조)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운영종료, 활동 평가 및 기록(제7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종료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나. 종합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39
----------	-----

제출연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주민자치과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2019.12.3., 법률 제16666호)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2조)
- 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제3조~제4조)
- 다.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제5조~제6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운영종료, 활동 평가 및 기록(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례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24. 8. 9.~2024.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에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재정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 본부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지원단의 운영 종료) 구청장은 재난 복구 상황, 이재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단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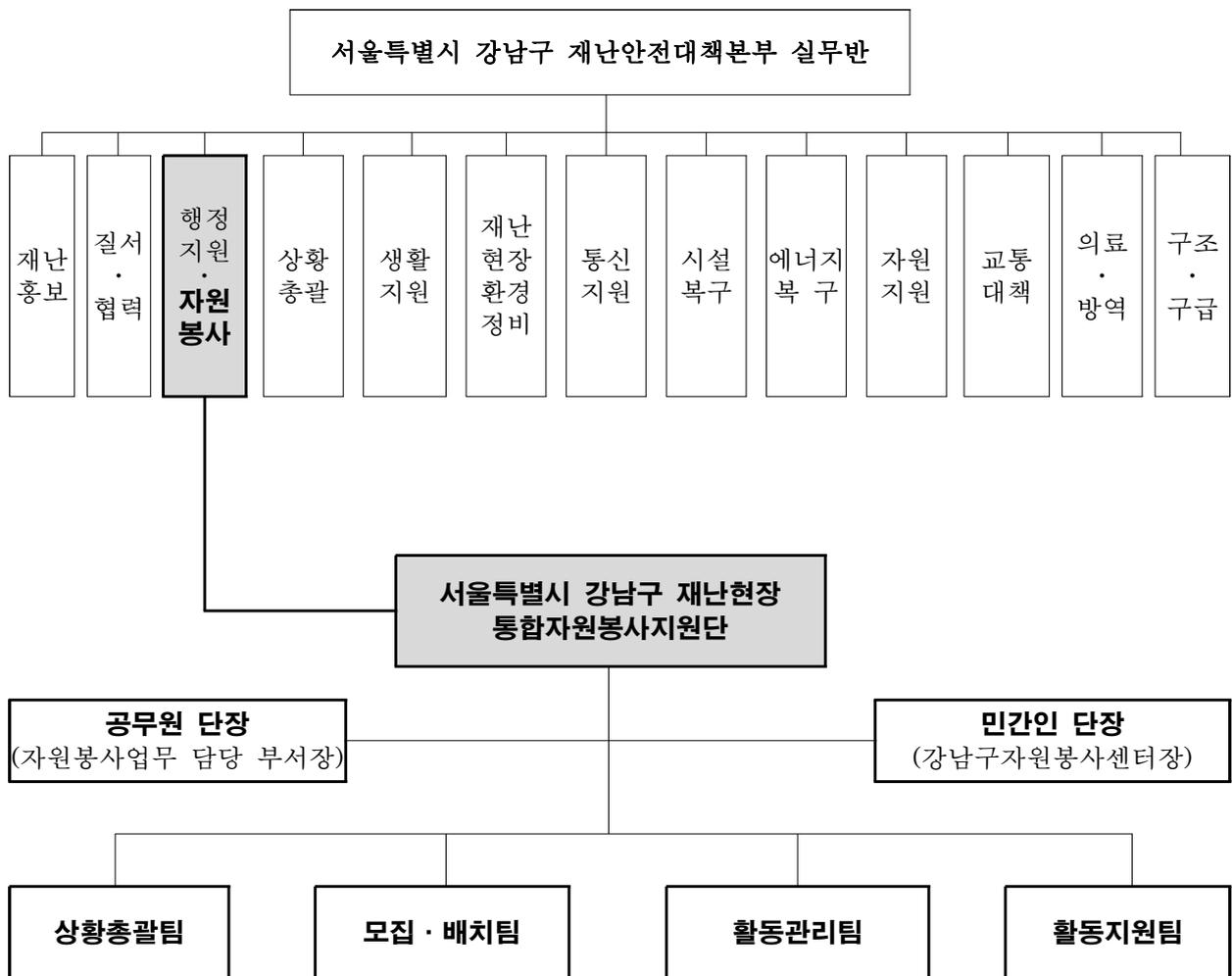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단장	공무원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행정·재정 총괄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실 무 팀	상황총괄팀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수요 파악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자원봉사활동 관련 행·재정 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모집·배치팀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배치 ▶ 활동 전 사전 교육
	활동관리팀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 기록 등)
	활동지원팀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김미화(02-3423-5212)